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2일, 복기왕의원 등 23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전체회의(2024. 8.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원회의(2025. 11. 28.)

상정, 축조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원회의(2026. 4. 9.)

상정, 축조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소위원회의(2026. 4. 14.)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2026. 4. 14.)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복기왕의원)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천문, 항공, 우주, 유전자 등 첨단 분야에서 실험 장비가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연구실험데이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양질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공개·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플랫폼의 구축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음. 미국, 영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공적자금을 투입한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 과정에서 생성된 연구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우리나라도 2018년 국가연구데이터 공유·활용전략을 수립하고, 2019년 연구데이터관리계획(DMP)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 구축 등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해왔음. 그러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에 대한 근거가 지침(공동관리규정)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이렇다 보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수많은 연구데이터들이 연구 종료 후 활용되지 못하거나 연구자 개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 그 정확한 규모마저 확인되지 못한 채 연구데이터가 잊히거나 소실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국가적 손실임. 국가자산이자 과학기술의 원천인 연구데이터가 과학자들의 후속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연구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개방형 연구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정법 마련이 필

요한 것임.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 심화 될 연구인력난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연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연구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연구데이터 공유활용체계를 조속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연구데이터센터, 전문연구데이터센터를 비롯한 각 연구개발기관에서 국가연구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더불어 국가연구데이터 공개원칙, 표준화, 품질관리, 보안관리, 활용촉진, 연구자 권리보호, 전문인력 양성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정들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수많은 연구데이터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보존되고 연구자와 연구기관 간 데이터 공유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대훈)

제정안은 연구데이터 관리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여 국가자산이자 과학기술의 원천인 양질의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공개·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과학자들의 후속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제정안의 심의에 있어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모든 국가연구데이터를 개방과 공유가 원칙으로 규정하는 것

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연구데이터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와 같이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공개할 경우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특허법」상의 특허권과 같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게 인정되는 배타적 성격을 가지는 지식재산권과 충돌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임.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과제비에 국가 예산이 매칭되는 비율은 과제마다 상이할 것인데 그에 대한 고려없이 모든 국가연구데이터에 대해 개방과 공유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연구데이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와 이를 공개·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해외 주요국의 연구데이터 관리체계를 검토해보면, 연구데이터 관리를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최형두)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